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2026. 9. 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26-97

나. 제 안 자: 김진천 의원 외 5인

다. 제안일자: 2026년 8월 21일(금)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6년 8월 24일(월)

2. 제안사유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총선거”라는 표현을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원활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용어 정비(안 제5조)

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 명확화(안 제8조 및 제11조)

다. 관련 조례의 “총선거” 용어를 일괄 정비(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6. 8. 24. ~ 8. 28.(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김진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호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총선거”도 동일하게 정비하여 **관련 조례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총선거” 용어의 정비

○ 「지방자치법」 제57조제2항은[1]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1)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현행 조례의 “총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용어만으로는 어떤 선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관련 조례에서도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총선거 등 **선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따라서 “총선거”를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정비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생 략)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② (현행과 같음)

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대상의 명확화

○ 현행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위원의 범위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호선’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호선 당시 재석하지 않은 위원이 선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하여 호선 당시 **재석하고 있는 위원으로 선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③ (생 략) 제11조(부위원장) ① (생 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생 략)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부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진구·서초구, 부위원장은 광진구·금천구·서초구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확인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도 위원장 등의 호선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출석위원 중에서”,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등으로 규정하여, 호선 대상자의 회의 참석 여부를 별도로 명시한 입법례가 확인됨.**

< 호선 대상의 참석 여부를 명시한 입법례 >

구분	자치법규	호선 관련 규정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은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
금천구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부위원장은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
서초구의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은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보은군	「보은군 건축 조례」	위원장 유고 시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위원장·부위원장 불출석 시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

○ 이와 같이 ‘호선’이라는 용어와 별도로 호선 대상자의 회의 참석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확인되는바, **개정안은 “재석위원 가운데”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선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라. 부칙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개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본 개정안의 용어 정비 취지를 관련 조례에도 동일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간 용어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마.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총선거”를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각 위원회 부위원장의 호선 대상을 “재석위원”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 **“총선거”의 용어 정비는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조례의 명확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출될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호선 당시 재석하지 않은 위원이 선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호선 대상자의 회의 참석 여부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출석위원”, “재석위원” 등으로 별도로 규정한 입법례가 확인되는바, **“재석위원 가운데”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선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는 데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 대상을 조례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위원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붙임 1 타 자치구 입법례(총선거 용어 관련)

연번	자치구	조례명	관련 규정상 표현
1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하 "총선거")
2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3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총선거
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 총선거
5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총선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6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총선거
7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8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총선거
9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하 "총선거")
10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전국동시지방선거
1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하 "총선거")
12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총선거
13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총선거")
14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하 "총선거")
15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총선거
16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17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18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전국동시지방선거
1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전국동시지방선거
20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21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총선거")
22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선거
23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총선거
24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의회 총선거 (이하 "총선거")

붙임 2 타 자치구 입법례(호선 규정 관련)

연번	구분	조례명	관련 조항
1	광진구의 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43조(부위원장)**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2	금천구의 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부위원장)**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3	서초구의 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42조(부위원장)**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4	서 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보은군	「보은군 건축 조례」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6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5조의7(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 개최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붙임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